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송바우나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개정이유

-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의 경제성 추구
- 연간 회의총일수를 연장하여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 등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으로 개정함. (안 제1조)
- 연간 회의총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변경함. (안 제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함. (안 제5조)

3. 검토 및 종합의견

- 개정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 제4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연간 회의 총 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이므로 “정례회 등 운영”으로 간소화하여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개정 조례(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함.
따라서, 조례(안) 제1조에 약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근거 조항을 구체화한 것은 적합함.
- 개정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서 “연간 회의총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임.
또한, 연간 회의총일수를 10일 연장하여 110일로 개정하는 사항은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 의결과 현장활동 강화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 조례(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 “반복규정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 제6조는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하는 규칙명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여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가. 경기도 시·군 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 연간회의 총일수 현황

회기일수	계	120일	110일	100일	95일	90일	80일	비고
시·군의회 수	31	1	2	16	1	9	2	

○ 의회별 연간회의 총일수 현황

(단위 : 일)

구분	조례명	회기 일수	연장일수
안산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	10
양주시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120	없음
수원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100	20
용인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10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성남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11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부천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100	20
고양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안양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	20
광명시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	10
시흥시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90	10
과천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80	10
화성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	20
이천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10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여주시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	10
김포시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9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	10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110	10
안성시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100	10
군포시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9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의왕시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90	10
구리시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100	10
하남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90	10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95	20
파주시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100	10
광주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8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오산시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100	10
평택시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100	10
포천시	포천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100	10
양평군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9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가평군	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100	10
연천군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 동두천의회는 회기일수 100일 넘은 적 없음(평균 75일)

나. 전국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 시·군의회 회기일수

(단위 : 일)

구분	조례명	회기 일수	연장일수
창원시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0	20
청주시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	없음
전주시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100	10
천안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100	10
김해시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95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포항시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	없음
수원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100	20
용인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10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성남시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11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부천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100	20
고양시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	연장가능하나 정하지 않음
안양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0	20
화성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	20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90	10
안산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100	10

다. 최근 5년간 회기운영 비교(안산시의회, 성남시의회)

○ 안산시의회 회기 일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6일	96일	104일 (의장단 선거 관련 파행)	96일	96일

○ 성남시의회 회기 일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5일	85일	94일	102일 (의장단 선거 관련 파행)	73일

라. 시군 의회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 실적

구분	연간회기일수			시정질문
	계	정례회	임시회	
안산시의회	7회 96일	2회 49일	5회 47일	4회(정례회2, 임시회2)
수원시의회	8회 100일	2회 45일	6회 55일	1회(필요시 의결)
성남시의회	7회 73일	2회 41일	5회 32일	2회(정례회2)
고양시의회	9회 100일	2회 43일	7회 54일	4회(정례회2, 임시회2)
부천시의회	8회 96일	2회 42일	6회 54일	5회(정례회2, 임시회3)
용인시의회	9회 94일	2회 44일	7회 50일	2회(정례회2)
안양시의회	8회 99일	2회 48일	6회 51일	2회(임시회2)
시흥시의회	9회 90일	2회 50일	7회 40일	2회(정례회2)
경기도의회	8회 128일	2회 64일	6회 64일	3회(정례회1, 임시회2)